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105
----------	-----

제출년월일 : 1999. 4.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99 공립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시험에 선발된 자의 교과전담 교사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 교육과정 수강료를 정하고자함.

주요골자

- 보수교육대상자 수강료(안 제2조)
「80명미만 1,071,000원, 120명미만 954,000원, 160명미만 887,000원, 200명미만 854,000원, 240명미만 826,000원, 280명미만 811,000원, 320명미만 796,000원, 320명이상 787,000원」
-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전까지 납부(안 제3조)
- 과오납 및 개강하기전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강료 미반환(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
-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수강허가 취소(안 제5조)

제정근거

-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

조례안 : 덧붙임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시 수강료에 관한 사항 교육부 교양 81820-356(‘99.3.20)공문 사본 : 덧붙임
- 타시·도 보수교육시 수강료 징수 현황 : 덧붙임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료)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전까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입한다

제4조(수강료의 미반환)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

1. 과오납금의 경우
2. 개강하기전 부득이 한 사유로 보수 교육을 받지 못 하게 된 경우

제5조(징수방법)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

교육과정	교육시간	대상인원	수강료	비고
초등학교교과 전담교사과정	336시간	80명 미만	1,071,000원	
		120명 미만	954,000원	
		160명 미만	887,000원	
		200명 미만	854,000원	
		240명 미만	826,000원	
		280명 미만	811,000원	
		320명 미만	796,000원	
		320명 이상	787,000원	

관계법령 발췌서

□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686호 1996. 8. 30)

제8조(수강료)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